

-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3
----------	-----

2011년 2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월 26일, 남재경 의원 외 12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1년 1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1년 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남재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상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2에서는 주·정차 금지의 예외 사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등을 정한 곳에 한해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추석이나 설 등의 전통시장 이용수요가 많은 경우에 안내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운영을 통해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전통시장은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편리성이 높은 대규모 할인점, 백화점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이용객 감소와 함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의 주정차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건의함

나. 주문

- 도로상의 주·정차 금지 및 허용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은 주·정차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장소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통시장의 경영이 어려워 상인들의 경제난이 큰 바, 전통시장 방문객에 대한 상시적인 주차와 정차를 허용하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와 서민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건의함.

다. 이송처

- 국회 : 국회의장
- 정부 :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찰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동 건의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설치 후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임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 최근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대규모 주차시설을 갖춘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권이 축소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상시허용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의 상권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결정한바 있고('10.8.18), 서울시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권한의 조기이양을 요청('11.2.9)한바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건의안을 통해 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지정권자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이양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하더라도 도심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심지 내부의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허용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도로상의 주·정차 금지 및 허용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은 주·정차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2는 주·정차 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등을 정한 곳에 한해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추석이나 설 등의 전통시장 이용수요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안내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운영을 통해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편리성이 높은 대규모 할인점, 백화점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이용객 감소와 함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바,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의 주정차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1.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